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2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 10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 10. 19.

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8. 10. 2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

가. 제안이유

교육비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교육복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복을 입는 학생에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교복 구입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(안 제3조~제5조)
- 교복 구입비의 지원절차 및 환수(안 제6조~제7조)
- 조례 시행일 및 적용례(부칙 안 제1조~제2조)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 유무 : 필요함

○ 부모의 경제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요즘 "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"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타 시·군·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무상교육 시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줄여 헌법 이념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근거가 되는 이건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나. 조례 제정의 적법여부 : 적법함

○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이거나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여야 할 것입니다.(근거법령:별첨1,별첨2)

○ 아동 청소년 복지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 되며,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는 "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(근거법령:별첨3)

○ 따라서, 청소년 교육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건 교복지원 조례안 사무는 "지방자치 고유사무"에 해당 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서 위임한 "단체위임 사무"에 해당되므로 교복지원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다.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유무 : 28개 지자체 제정

○ 서울시 중에는 강동구가 우리구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2018.10.4일 제정하였습니다.

○ 전국 타 시·군·구의 경우 2016년 2개, 2017년 5개, 2018년 20개 등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
라. 조문 구성체계의 적정여부 : 적정함

○ 이건 조례안의 경우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칙 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조문의 항목이 적고 내용이 간단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.

○ 조문의 구성체계가 적정한지 여부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조, 항, 호 등의 구분과 조문의 용어와 문장 등이 조례로서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고 교복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마. 조문 내용의 적정여부 : 적정함

○ 이건 조례안의 목적이나 정의 교복지원 대상이나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환수 등의 내용 측면을 검토해 볼 때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한편,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교복구입비로 개인당 30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다만, 이건 조례안 제2조(정의) 제1호에서 "학교란 '초·중등교육법"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"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등의 여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.(근거법령:별첨4)

바.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 : 예산확보시 실현가능

○ 교복지원 사업은 연간 8억원 내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큰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.

○ 이건 조례안 제3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에 따르면 "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"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○ 또한, 이건 조례안 제5조(지원금액) 제1항에 의하면 "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○ 따라서, 교복구입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건 조례안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이건 조례안 부칙 제2조(적용례) 제2항에서 "이 조례는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"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복지원비가 2019년 예산에 편성 확보된다면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사. 비용 추계의 적정 여부 : 적정함

○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별첨5의 "교복지원 조례 비용추계서"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4,26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42억 7950만원을 지급한다고 산출되어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연평균 8억 5590만원입니다.

○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중학생 입학생을 적용하여 추정였고, 1인당 지원비 30만원의 단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안내한 "교복학교 주관구매 상한가격"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. (별첨5)

○ 따라서, 교복지원비 비용추계 산출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토대로 상한가격을 정하고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달한 공문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교복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전체 비용은 감소되거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아. 검토 종합의견

○ 위와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적법성 유무,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사례 유무, 조문 구성체계의 적정여부와 조문 내용의 적정여부,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와 비용추계의 적정

여부 등을 검토해 볼 때 외형상 이건 조례안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○ 다만, 이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초·중·고 학생 지원대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의회가 승인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